

민생경제점검회의

25-4-1

조속한 민생 안정을 위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

2025. 2. 28.

관계부처 합동

I. 서민층 금융애로 및 현 상황에 대한 평가

- (자금애로) 최근 기준금리 인하 등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주담대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, **신용대출은 점차 감소**
 - * 신용대출 잔액 : ('21년말) 439.6조원 → ('24.9월말) 398.9조원 [△40.7조원]
- 특히, 신용 하위 20% 이하 **저신용·취약층**과 담보력이 취약한 **청년층** 중심으로 신용대출이 크게 감소
 - * 신용 하위20% 신용대출 잔액(조원) : ('22) 85.9 ('23) 84.3 ('24.9월) 78.3
 - ** 연령별 신용대출 증감율(%,'21 대비 '24년) : **(20대)△26.9 (30대)△23.5** (50대)+0.7 (60대)+14.8
- (상환부담) 채무부담으로 인한 **채무조정 신청**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, 특히 **연체발생 前단계**와 **단기연체자** 채무조정 수요 급증
 - * 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(만건) : ('21)12.7 → ('22)13.8 → ('23)18.5 → ('24)19.5
 - ② 신속채무조정(연체우려~연체 30일↓) 신청(만건) : ('21)1.2 → ('22)2.2 → ('23)4.6 → ('24)5.1

II.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

1 정책서민금융 지원 강화

- ① (총 지원규모) 금년 **11.8조원**을 공급(당초 10.8조원)하여 **1조원 추가 확대**하고,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서민금융 상품을 신속 집행
 - * 공급실적(조원) : ('20) 8.9 ('21) 8.7 ('22) 9.7 ('23) 10.6 ('24) 9.3 ('25^{목표}) **10.8→11.8**
- ② (맞춤형 지원) 정책지원 대상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추진
 - ① (연체자·불법사금융 우려자^{+0.1조원}) 연체자, 무소득자가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“**불사금 예방대출**”(舊소액생계비대출) **확대**
 - * ('24) 1천억원 → ('25) **2천억원** ** 최초 대출한도 상향(50→100만원)
 - ② (저소득·저신용층) 햇살론119^{+0.6조원}, 사업자햇살론^{+0.15조원}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를, 햇살론유스^{+0.1조원}를 통해 청년층 지원을 강화

- ③ (성실상환자)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는 은행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을 개선하고, 취약층 신용평가 개선* 병행

* 청년 학자금대출 신용평가 불이익 개선,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정보공유

2 민간서민금융 활성화

- ① (중금리대출) 대출규제 인센티브 등*을 통해 금융권의 '25년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를 36.8조원까지 확대 유도('24년 33.0조원 대비 3.8조원↑)

* [민간중금리] 예대출 산정방식 개선, [사잇돌대출] 대상차주 범위 확대

- ② (중저신용자대출)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목표를 강화^①하고, 지역채투자평가방식을 개선^②하여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유도

* ① 평잔 30% 이상 → 신규취급액 30% 이상 추가, ② 평가시 중저신용자대출 포함

3 채무조정 확대

- ① (금융권 자체 채무조정)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「개인채무자 보호법」에 따른 채무조정이 가능토록 하고, 취약층 특성에 따른 맞춤형 홍보 추진

- ② (선제적 채무조정)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중 한시적으로 지원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'특례'제도*를 상시화

* (신속채무조정) 기존상환유예 → 특례금리인하, (사전채무조정) 기존금리인하 → 특례취약층 원금감면

- ③ (다중채무자 등 맞춤형 채무조정) 취약층, 자영업자, 청년, 장기상환자의 채무조정 감면율을 확대하는 등 지원 강화

* [노령층/기초수급자/중증장애인] 미상각채권 원금감면을 확대(최대 30%→50%)
[청년] 1년 이상 상환 후 일시완제시 잔여채무 원금감면 확대(10~15% → 20%)

⇒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, 서민·취약층의 경제적 자활·상환능력 제고를 돕기 위한 금융·고용·복지 복합지원도 적극 병행

순서

I. 서민층 금융애로 및 현 상황에 대한 평가 ..	1
II.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	2
1. 정책서민금융 지원 강화	3
2. 민간서민금융 활성화	7
3. 채무조정 확대	9

1. 서민층 금융애로 및 현 상황에 대한 평가

□ (자금애로) 최근 기준금리 인하 등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주담대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, **신용대출**은 점차 감소

* 가계대출 잔액(NICE, 조원) : ('21년말) 1,888.2 → ('24.5월말)1,869.0 → ('24.9월말) 1,879.3
 ↳ 주 담 대 잔액 : ('21년말) 828.3조원 → ('24.9월말) 934.7조원 +106.3조원
 신용대출 잔액 : ('21년말) 439.6조원 → ('24.9월말) 398.9조원 **△40.7조원**

○ 특히, **저신용자** 대출한도 축소가 확대되어 1인당 대출잔액이 감소하는 등 저신용·취약층의 금융애로가 가중

* 신용 하위20% 신용대출 잔액(조원) : ('22) 85.9 ('23) 84.3 ('24.9월) 78.3

** ['21년말→'24.9월 기간 중 저신용 차주 대출잔액 변동]
 : 1인당 대출잔액 감소율(△4.3%) > 대출잔액 총량 감소율(△3.7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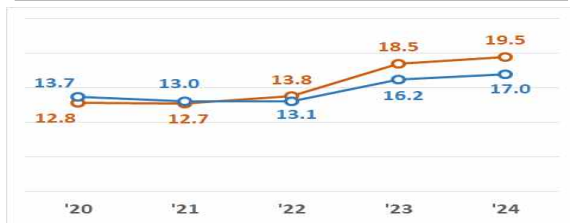
○ 연령별로는, 중·장년층에 비해 담보여력이 취약한 **20~30대 청년층** 중심으로 신용대출이 크게 감소

* 연령별 신용대출 증감율(% , '21년 대비 '24년)
 : **(20대) △26.9 (30대) △23.5** (40대) △9.9 (50대) +0.7 (60대) +14.8

□ (상환부담) 내수부진으로 서민·취약층의 상환능력 개선이 지체되는 가운데 **채무부담**으로 인한 **채무조정 신청**이 지속 증가

○ 최근에는 연체 발생 前 단계인 연체 우려자 및 단기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**신속·사전채무조정**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

신복위 채무조정/법원 개인회생·파산 신청추이



※ 범례 : ■ 신복위 채무조정 ■ 법원 개인회생·파산 ■ 만명

채무조정 제도별 신청 건수

(단위 : 명)	'20년 (A)	'21년	'22년	'23년	'24년 (B)	증감율 (B-A)/A
신속채무조정	7,166	11,849	21,996	45,925	50,527	+605.1
사전채무조정	22,102	18,784	26,827	39,512	36,921	+67.0
개인워크아웃	99,486	96,514	89,521	99,706	107,984	+8.5
전체	128,754	127,147	138,344	185,143	195,432	+51.8

⇒ (정책방향) **저신용자·청년, 영세 자영업자, 연체자** 등 취약층 중심으로 **금융지원, 채무조정**을 강화하는 한편, **금융·고용·복지 복합지원**을 통한 경제적 자활 지원을 확대할 필요

II.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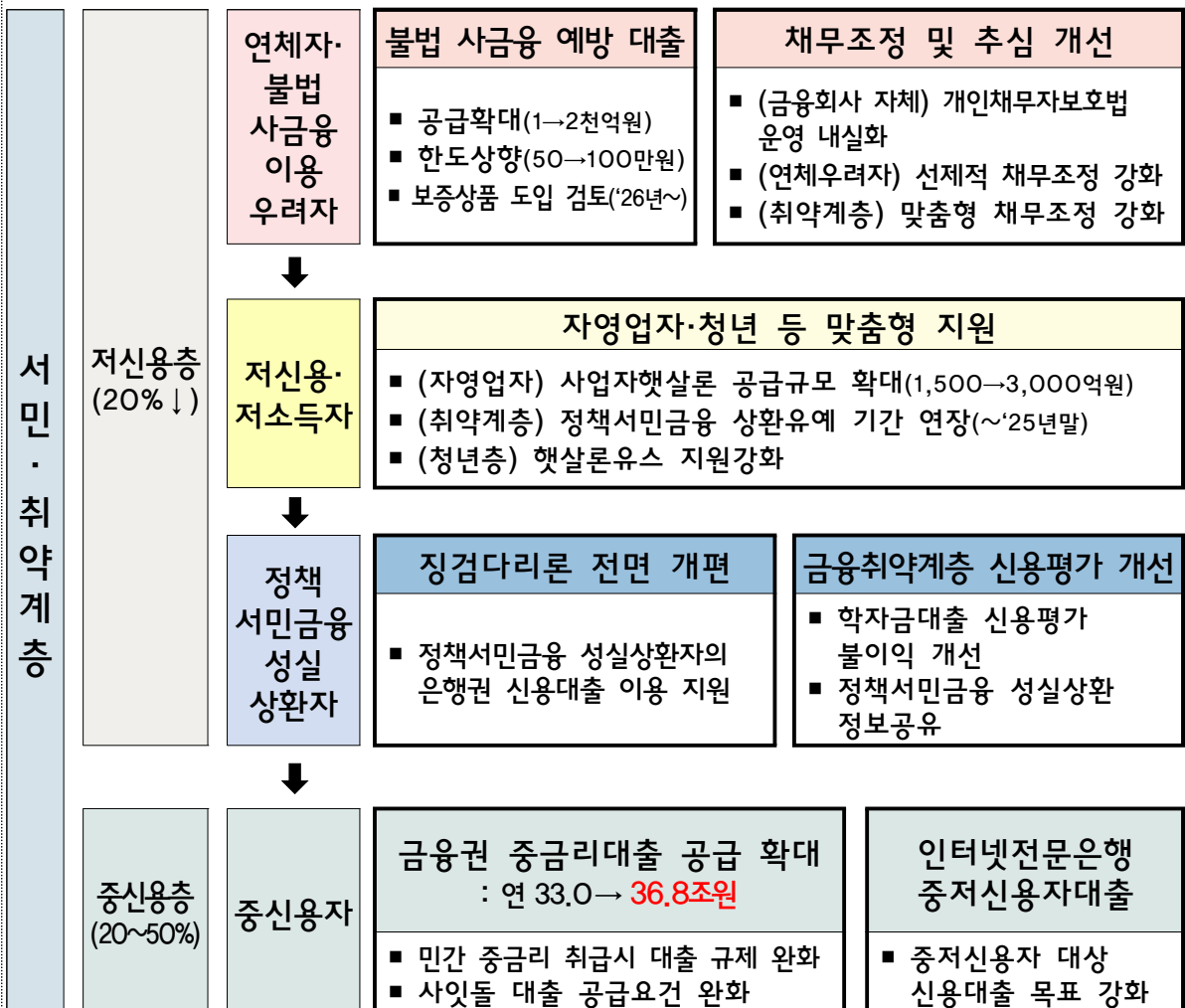
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**연계** 강화를 통한 **층층한 금융안전망 확충**

정책서민금융 지원 강화

- '25년 공급계획 10.8조원(연초 발표) → **11.8조원**으로 1조원 추가 확대
- '25년 상반기 중 60% 내외 조기집행 추진

정책서민금융의 탄력적 운영

- (수요자 중심) 정책서민금융 상품 취급 금융업권 확대
- (탄력성 제고) 계정 간 이동을 통한 자금의 효율적 활용



제도권 금융회사로 진입 촉진

1

정책서민금융 지원 강화

◆ 서민·취약계층의 자금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고, 중저신용자에 대한 민간금융권 연계 강화

1.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: '25년 당초 10.8조원 → 11.8조원으로 확대

□ '25년에는 연초 발표한 10.8조원에서 11.8조원으로 1조원 추가 확대

* 연도별 공급실적(조원) : ('20) 8.9 ('21) 8.7 ('22) 9.7 ('23) 10.6 ('24) 9.3 ('25^{목표}) 10.8→11.8

○ **서금원** 정부(복권기금, 예산 등) 및 금융회사 출연, 기부금 등 활용하여 공급 가능한 최대 규모인 7.3조원 공급

* 불법사금융예방대출(당초1,000→확대2,000억원) 공급 확대, 햇살론119 신설(확대6,000억원) 등

○ **은행·지신보** 새희망홀씨 4.2조원, 사업자햇살론 0.3조원

□ 향후에도 정책(재정)과 민간(금융권)이 협력하여 서민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

< '24년 정책서민금융 지원현황 및 '25년 계획 (단위 : 억원) >

구 분	'24년 공급실적	2025년			
		당초 공급계획	수정안		증감
근로자햇살론	28,087	33,300	33,300	-	
햇살론유스*	1,856	2,000	재정(복권기금) 3,000	+1,000	
햇살론15	10,853	10,500	10,500	-	
서금원(24.7~)	6,727	10,500	10,500	-	
행복기금(~24.6)	4,126	-	-	-	
최저특례	1,935	1,700	1,700	-	
햇살론뱅크	8,810	12,000	12,000	-	
햇살론카드	345	500	500	-	
햇살론119 ^{신설**}	-	-	금융권(은행출연) 6,000	+6,000	
보증 소계	51,886	60,000	67,000	+7,000	
불법사금융 예방대출	983	1,000	서금원 2,000	+1,000	
미소금융	3,493	4,000	4,000	-	
대출 소계	4,476	5,000	6,000	+1,000	
서금원 소계	56,362	65,000	73,000	+8,000	
새희망홀씨	35,165	41,000 ^P	은행 42,253	+1,253	
사업자햇살론	1,309	1,500	지신보 3,000	+1,500	
정책서민금융 합계	92,836	107,500	118,253	+10,753	

* 연중 공급추이를 보아가며 복권기금 150억원 추가출연 추진

** 「은행권 소상공인 지원방안」(24.12.24일) 중 '상생 보증' 프로그램으로,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119 성실상환자에게 1인 최대 2천만원까지 서금원 보증을 통해 자금지원

2. 정책서민금융 조기집행

- 근로자햇살론, 햇살론15,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주요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상반기 중 60% 내외 수준 조기 공급 추진
- 수립된 월별 공급계획에 따라 집행실적 점검

< 서금원 주요 서민금융상품 '25년 상반기 공급계획(안) >

구분 (단위: 억원)	'25년 재원	'25년 공급계획(A)			상반기 집행률 (B/A)
		상반기(B)	하반기		
근로자햇살론	5,395	33,300	18,810	14,490	56.5%
햇살론15	1,450	10,500	6,500	4,000	61.9%
최저신용자 특례보증	560	1,700	1,000	700	58.8%
조기집행 소계	7,405	45,500	26,310	19,190	57.8%

3. 연체자 및 불법사금융 우려자 : “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” 지원 강화

※ 수요자가 '불법사금융 예방'이라는 정책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"(舊)소액생계비대출"을 “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”로 명칭 변경 추진

① 공급 확대 '24년 1,000억원 → '25년 2,000억원으로 확대

- 휴면예금 운용수익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공급규모 확대

② 대출한도 상향 최초 대출한도를 기본 50만원 → 100만원 상향

구분	현행	개선
연체자	최대 1백만원 (최초 50만원 + 추가 50만원)	최대 1백만원 (최초 50만원 + 추가 50만원)
非연체자	* 단, 의료·주거·교육비 등 특정목적자금 입증시 최초 대출시에도 1백만원	최대 1백만원 (최초 100만원)

③ '26년 이후 공급규모(연 2천억원) 유지를 위해 보증상품 도입 검토

* 현재와 같이 직접대출(연체자)뿐 아니라 보증부대출(비연체자)을 통한 공급도 병행하는 방안 검토

4. 저소득·저신용층 : 자영업자·청년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

① **저소득·저신용 자영업자** 사업자 햇살론을 통한 지원 강화 중기부

- 공급규모를 당초 1,500억원에서 최대 3,000억원*까지 확대
- * 이중 1천억원은 보증료 및 금리 등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으로 운용

② **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**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* 신청기간을 당초 '24년말에서 '25년말까지 1년 연장

- * 연체 30일 이상, 영세 소상공인(연매출 3억원 이하) 등 대상 6^{최초}+6^{추가}개월 지원

③ **청년층** 햇살론유스를 통한 지원 강화

- ① (공급확대) 2,000 → 3,000억원
 - ② (금리인하) 사회적배려 청년 대상 2% 저리 자금지원(1.6%p↓)
 - ③ (채널확대) 은행 취급유인을 제고를 통한 공급채널 확대
- * 기존 채널(3개 은행) 대비 2배 이상 확대 목표

5.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 : 전용상품('징검다리론') 전면 개편

□ (현행) 햇살론 이용자의 경우 성실히 상환하여도 더딘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정책서민금융을 재이용하는 경향

- 한편,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출시된 은행권 전용 신용대출상품(징검다리론)은 제한된 대상*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
- * 정책서민금융 2년 이상 거래 & 75% 이상 상환 & 신용 상위 80%

□ (개선)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가 은행권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(금리 9% 이내, 한도 3천만원)을 전면 개편

- **대상** 서금원이 강화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검증된 인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선
- * 정책서민금융을 2년 이상 거래(완제 포함)하고 서민특화 신용평가모형 선별

- **절차** '서민금융 잇다' 내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여 이용자가 지원자격 확인부터 대출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이용

6. 금융취약계층 신용평가 개선

1 **청년** 학자금대출 신용평가 불이익 개선

- **(현행)** 학자금대출 특성상 여러 번(학기별)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으나, 대출이 개별 건으로 취급되어 신용평가상 불이익 우려
- **(개선)** 학자금대출 여러 건을 보유한 경우 1건으로 처리토록 하여 사회초년생 청년의 정상적인 금융활동 지원

2 **성실상환자**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정보공유

- **(현행)** 정책서민금융 상환 여부가 CB사에 제공(신용평점에 반영)되고 있으나, 금융회사 대출심사 과정에서의 활용은 미흡한 상황
- **(개선)**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정보 등을 금융권에 공유하여 저신용 성실상환자가 민간 금융회사를 통한 자금조달시 활용

7. 정책서민금융 전달체계 개선

1 **수요자 중심** 정책서민금융 상품 취급 금융업권 확대

- **(현행)** 정책서민금융 상품별 취급업권이 상이하고 출연재원을 각 출연업권이 취급하는 상품 중심으로 활용 중
* (예) [근로자햇살론] 2금융권, [햇살론15] 은행, [햇살론뱅크] 은행, [햇살론카드] 카드사
- **(개선)** 금융권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공급채널을 확대하여 이용자 접점을 넓히는 등 수요자 중심의 지원 추진

2 **탄력성 제고** 계정 간 이동을 통한 자금의 효율적 활용

- **(현행)** 서민금융 보완계정은 대부분의 보증상품을 운용하는 계정임에도, 휴면예금 수익금 등의 탄력적인 활용이 곤란
* 현재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은 자활지원계정으로만 전출하여 사용 가능
- **(개선)** 휴면예금 운용수익을 보완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적인 자금 운용 추진

2

민간서민금융 활성화

- ◆ 규제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중금리대출(사잇돌·민간 중금리) 및 인터넷은행 중·저신용자 대출 활성화

1. 금융권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유도 : ('24) 33.0 → ('25) 36.8조원

① 민간 중금리* 대출 규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공급 확대 유도

- * 신용평점 하위 50% 이하 + 업권별 금리상한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
- (현행) 저축은행·상호금융권은 과도한 대출 확대 방지,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예금에 대한 대출금 비율을 100% 이내로 제한
 - ※ 저축은행은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'24년말까지 규제비율은 110%로 완화중
- 예대율 산정시 햇살론, 사잇돌대출은 대출금에서 제외 중이나, 민간중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별도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
- (개선) 민간중금리 대출의 일부를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에서 제외하여 민간중금리 취급 유인 제고

② 사잇돌대출* 공급요건 완화

- *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통해 지원하는 중금리 보증대출상품
- (현행) 대상차주 범위가 저신용자 중심으로 제한*되어, 보증 공급여력 감소, 부실율 증가 등으로 안정적 공급 제약 가능성
 - * 신용점수 기준 하위 30%에게 70% 이상 공급
 - 또한 햇살론 등* 타 정책금융상품과 대상차주가 상당부분 중복
 - * 근로자햇살론(신용평점 하위 20%), 최저신용자특례보증(신용평점 하위 10%) 등
- (개선) 대상차주 범위를 확대하여 사잇돌대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

2. 인터넷전문은행 등 중저신용자대출 활성화

1] **인터넷전문은행***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 강화

* 신용평점 하위 50% 이하

- **(현행)** 중·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를 “**평잔 30% 이상**”이면서 전년대비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 중
- **(개선)** “**신규취급액 30% 이상**” 기준을 추가, 경기상황 등에 따라 임의로 중저신용자 대출을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개선
 - 동 신규취급액 비중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분기별 공시 대상에 추가하고,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필요시 개선 권고
 - 이행현황을 신사업 인·허가시 고려하는 등 관리·감독 지속('25년~)

2] **은행** '지역채투자평가'시 중저신용자 대출 전액 반영

- **(현행)** 지역채투자 평가시 새희망홀씨 대출만 서민금융 실적*에 포함
 - * 서민대출 지원 항목(15점 배점)으로 ① 지역별 서민대출 비중(해당지역 서민대출 취급액 /가계대출액) ② 지역별 서민대출 증가율(전년도 취급액 대비 금년도 취급액 증가율)을 평가
- **(개선)** '25년도 평가 시부터 중·저신용자 대출*로 인정 범위 확대
 - * 금리상한 요건은 두지 않고, 신용평점 하위 50% 기준으로만 판단(현행 경영실태평가의 중·저신용자대출 지원의 적정성 평가 요건 준용)

⇒ 지역채투자평가 결과는 지자체 등 금고 선정시 활용되며, 평가등급이 대외 공개(보도자료)됨에 따라 은행의 중·저신용자 대출 확대 유도 가능

3

채무조정 확대

◆ 취약차주의 채무부담을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경감하여 재기를 지원

1. 개인채무자보호법('24.10.17일 시행) :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

□ (현행) 금융회사 대출을 연체한 이후에 채무자가 겪는 쏠 과정(연체-추심-양도)에 걸쳐 채무자 보호 규율체계* 마련

* ①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, ②연체부담 경감, ③추심제한(추심총량제·추심 유예제, 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), ④채권 매각 관련 규율 등

□ (개선) 채무조정 및 추심 관련 제도 등의 내실 있는 운영 도모

① **사전 채무조정 활성화** 은행의 비대면 모바일 앱*을 통해 개인 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선

* 현재 5개 은행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며, 여타 은행들도 확대 추진

-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우수사례 축적·배포를 통해 실질적인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화

② **홍보 강화** 취약층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홍보 추진

* (청년층)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플랫폼, (사회취약계층) 행정복지센터 (연체우려자) 서민금융플랫폼 등

2. 연체 우려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 강화

□ 연체우려, 단기연체자 등의 수요*를 감안, '23.4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 중(~'25.12월)인 채무조정 특례**를 상시화

* 신청자 수가 특례 前 대비 2배 증가: 3.3만명('24.4월~'24.12월) vs 1.6만명('22.4월~'22.12월)

** 신속채무조정(연체우려~연체30일): (기존) 상환유예 → (특례) 금리인하(30~50%)
사전채무조정(연체31~89일): (기존) 금리인하 → (특례) 취약층 원금감면(최대 30%)

3.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

① **노령층 등 취약계층** 장기연체 취약층의 미상각채권 감면 확대

* (現) 상각채권 : 최대 70% 감면, 미상각채권 : 최대 30% 감면

-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**노령층(70세 이상자)**, 기초수급자, 중증 장애인에 대해 미상각채권 원금을 최대 50%까지 감면

② **자영업자** 자영업자 원리금 감면 확대

-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**새출발기금의 협약기관**을 확대¹⁾하고, 신용회복위원회 차원에서도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²⁾

1) [’24.12월말 기준 협약기관] 새출발기금 3,321개, 신복위 6,980개,
↳ 주로 상호금융, 대부업권의 경우 새출발기금 협약대상에 미포함

2) [신속채무조정] (現) 이자율 30~50% 인하 → (改) 이자율 50% 인하
[사전채무조정] (現) 이자율 30~70% 인하 → (改) 이자율 70% 인하
[개인워크아웃] (現) 원금 최대 70% 감면 → (改) 원금 최대 80% 감면

③ **청년층** 장기연체 청년층의 일시완제 인센티브 강화

* (現) 개인워크아웃 1년 이상 상환 후 일시완제시 잔여 채무 10~15% 추가 감면 중

- 개인워크아웃을 이행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상환 후 일시완제하는 경우 잔여채무에 대한 원금감면 폭을 20%로 확대

④ **장기상환자** 개인워크아웃 장기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

① (성실상환자) 상환기간의 75% 이상(최소 4년 이상) 상환 후 잔여채무의 10% 추가 감면

② (상환곤란자) 1년 이상 상환자가 일시적으로 상환 곤란시 1년간 월 상환액의 50%만 상환하고, 상환기간 6개월 연장

* (예) 8년(96회차)간 매월 20만원씩 상환하기로 한 채무자가 12회차까지 상환한 경우 [13~24회차] 월 상환액 10만원(50%↓) & [25~96회차+6회차] 월 상환액 20만원

별첨

과제별 추진일정

세부 과제		추진시기	조치사항
① 정책서민금융 지원 강화			
1.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		'25년 연중	'25.1월 시행
2. 정책서민금융 조기집행		'25.상반기	'25.1월 시행
3.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지원 강화			
▶ 공급확대		'25.3월	휴면위 의결 등
▶ 대출한도 상향		'25.3월	전산개발 등
▶ 보증상품 도입		'26년 이후	기재부 협의 등
4. 자영업자·청년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			
▶ 사업자햇살론		'25년 연중	
▶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기간 연장		~'25.12월	'25.1월 시행
▶ 햇살론유스 지원 강화	공급확대	'25년 연중	복권기금 출연
	금리인하	'25.2분기	시행령 개정 등
	채널확대	'25년 연중	금융권 협의 등
5. 징검다리론 전면 개편		'25.3분기	금융권 협의 등
6. 금융취약계층 신용평가 개선			
▶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정보공유		'25.3분기	전산개발 등
▶ 청년의 학자금대출 신용평가 불이익 개선		'25.2분기	전산개발 등
7. 정책서민금융 전달체계 개선			
▶ 정책서민금융 상품 취급 금융업권 확대		'25년 연중	금융7관 협의 등
▶ 계정 간 이동을 통한 자금의 효율적 활용		'25년 중	시행령 개정
② 민간서민금융 활성화			
1. 금융권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유도			
▶ 민간 중금리 취급시 대출 규제 완화		'25.3월	방안 발표
▶ 사잇돌 대출 공급요건 완화		'25.3월	방안 발표
2.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			
▶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 강화		'25.1월~	분기별 실적점검
▶ 은행 '지역재투자평가'시 중저신용자 대출전액 반영		既조치 (25.1월)	매뉴얼 개정
③ 채무조정 확대			
1. 개인채무자보호법 :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		'25년 연중	이행상황 점검 등
2. 연체 우려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 강화		'25.6월	협약개정 등
3. 다중채무자 등 신복위 채무조정 강화		'25.6월	협약개정 등